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2. . . (제 회)	

유 료 도 로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원 희 룡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2. . .

입법예고안

1. 의결주문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화물운송업계 지원과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2022년 12월 31일
일몰 예정인 사업용 화물차·건설기계, 전기자동차·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고속국도 통행료 할인의 일몰기간을 2년 연장하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고속국도를 심야시간대(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에 이용
하는 사업용 화물차·건설기계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30%~
50%)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고자 함
- 나.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 전용 전자적인 지급수단을 이용하여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50%)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고자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22.7.1. ~ 2022.8.10.)

2) 행정규제 :

대통령령 제 호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8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2024년 12월 31일까지 고속국도를 심야시간대(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이용하는 3축 이상의 다음 각 목의 차량

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용 화물자동차

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설기계대여업용 건설기계

제8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2024년 12월 31일까지 고속국도를 심야시간대에 이용하는 3축 미만의 제7호 각 목의 차량으로서 제6항에 따른 전자적인 지급수단 중 화물자동차 및 건설기계 전용 지급수단을 이용해서 통행료를 납부하는 차량

제8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2024년 12월 31일까지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로서 제6항에 따른 전자적인 지급수단 중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 전용 지급수단을 이용하여 통행료를 납부하는 차량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 ① (생 략)	제8조(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 ① (현행과 같음)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u>2022년 12월 31일까지</u> 고속 국도를 심야시간대(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이용하는 3축 이상의 다음 각 목의 차량 가. (생 략) 나. (생 략)	7. <u>2024년 12월 31일까지</u> ----- ----- ----- ----- ----- 가.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8. <u>2022년 12월 31일까지</u> 고속 국도를 심야시간대에 이용하는 3축 미만의 제7호 각 목의 차량으로서 제6항에 따른 전자적인 지급수단 중 화물자동차 및 건설기계 전용 지급수단을 이용해서 통행료를 납부하는 차량	8. <u>2024년 12월 31일까지</u> ----- ----- ----- ----- ----- ----- -----
9. <u>2022년 12월 31일까지</u> 고속 국도를 이용하는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로서 제6항에 따른 전자적인 지급수단 중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 전용 지급수단을 이용하여 통행료를 납부하는 차량	9. <u>2024년 12월 31일까지</u> ----- ----- ----- ----- ----- ----- -----